

대주주등과의 신용공여 거래보고

2015. 8. 21

문서번호 : 기획 103-30

수 신 : 금융감독원장

참 조 :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

제 목 : 메리츠캐피탈(주) 단기금융한도 설정

「자본시장법」 제343조 제3항에 따라 계열사 신용공여 한도 설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신용공여 한도 설정 내용

- 거래유형 : 단기금융한도(CP) 설정
- 거래상대방 : 메리츠캐피탈(주)
- 거래한도 : 150억
- 약정기간 :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1년
- 약정금리 : 실세 금리 적용

2. 신용공여 한도 및 관련 규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343조 제1항, 동 시행령 제338조에 의거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5%인 235억 (합병 전 메리츠종합금융 자기자본 1,570억) 한도에 충족함.
- 「자본시장법」 제34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 완료. (첨부 된 이사회 의사록 참고)
- 본 내용은 신용공여 한도 설정에 대한 보고이며 실제 신용공여 한도 거래 발생시 분기별로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겠음.

메리츠종합금융증권

대표이사 최 희



본점소재지: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
작성자 : 경영관리팀 류남규 과장
연락처 : 02-6309-4850